

충남리포트 제173호

ChungNam Report

2015. 6. 26.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

이민정 산업경제연구부 초빙책임연구원, minjoun1006@cni.re.kr
여형범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hbyeo@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및 기금을 운영 중인 국내외 유사 사례를 통해 충남도 화력발전 특별회계(가칭)의 활용방향을 제안하는 것임.

요 약

- 재정보호는 지방분권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필수조건이고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런 가운데 지역이 자주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주목받고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발전·환경보호 등의 필요재원 확보 및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공공시설의 필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세이자 목적세임. 특히 특정자원분은 특정지역의 부존자원 채굴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 대응을 위해 지역보상차원으로 부과.
- 충남도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2014년에 약 165억 원, 2015년부터는 세율인상으로 약 360억 원의 세수를 갖게 되었음. 세수는 크지 않으나 과세자주권 확보의 첫걸음으로서의 의미는 큼.
-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원자력발전 특별회계, 일본에는 전원개발 촉진세가 있음. 이 두 사례 모두 대부분 지역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비사업 보조에 이용되고 있으나, 지역경제와 재정력향상의 선순환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음.
- 기금 운영은 지역의 독자적이고 다양한 사업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서울시 기후변화기금과 영국의 공동체에너지지원기금은 이에 대한 힌트를 제시하고 있음.

CONTENTS

< 요약 >

1. 지방재정의 현주소
2. 지역자원시설세란?
3. 국내외 유사 세원
4. 요약 및 제언

지방재정의 현주소 ◀

01

-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면서 부활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0여년간의 역사 속에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역량이 성장해왔음.
- 하지만 세입기준 국세:지방세=8:2 세출기준 국세:지방세=4:6(지방교육세 포함)에서 보이는 중앙의존적인 조세체계와 이로 인한 지자체의 낮은 재정력은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지역특성을 살린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재정보호는 지방분권을 위한 전제조건이고,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런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이 주목을 받고 있음.
- 충남도는 화력발전예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2014년 약 165억 원, 2015년부터는 세율인상(0.15원/kWh에서 2015년부터 0.3원/kWh으로 인상)으로 약 360억 원의 세수를 갖게 되었음. 세수는 크지 않으나 과세자주권 확보의 첫걸음으로서의 의미는 큼.

[표 1] 재정자립도 추이

(단위: %)

단체명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전국평균	57.2	56.2	54.4	53.6	53.9	53.6	52.2	51.9	52.3	51.1	45.0
충남평균 (순계)	30.5	32.7	35.3	36.9	37.8	36.6	36.6	35.4	35.5	36.0	30.2
본청*	26.2	29.0	29.4	30.4	29.7	28.1	24.0	28.3	28.6	29.4	25.6

자료) 재정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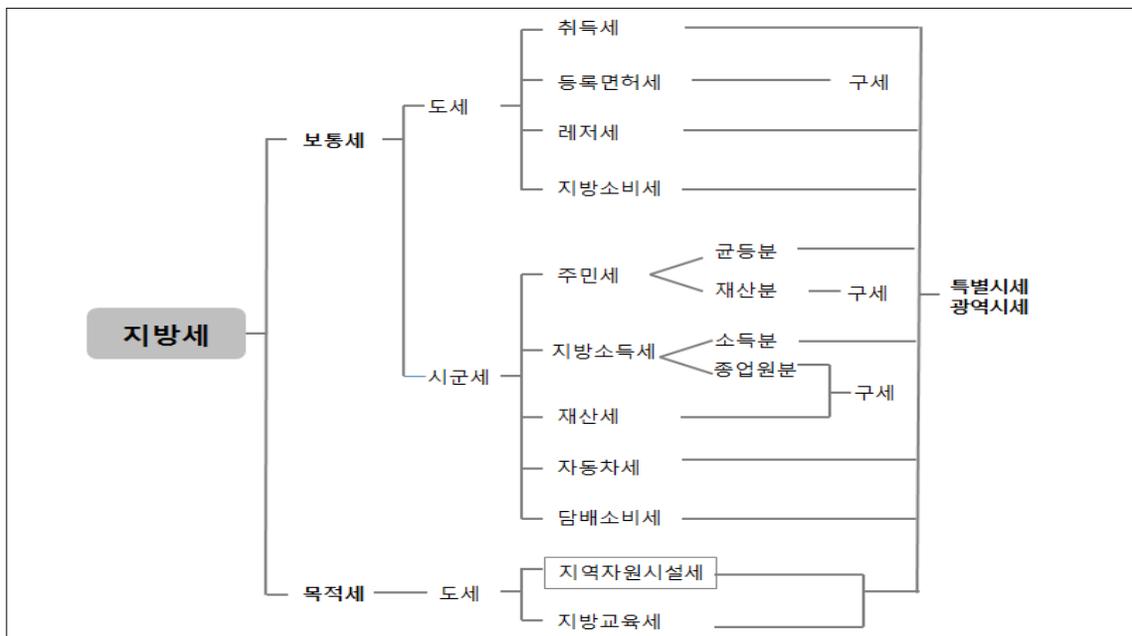
주) 당초예산 기준. 2014년도는 세입과목 개편으로 인해 전년대비 급격하락

*본청: 도청의 자체 가용재원으로 산정

02

▶ 지역자원시설세란?

- 지역자원시설세¹⁾는 지역의 균형발전·환경보호 등의 필요재원 확보 및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공공시설 등의 필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세이자 목적세²⁾임. 특히 특정자원분은 특정지역의 부존자원 채굴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 대응을 위해 지역보상차원으로 부과하는 성격을 띠고 있음.



[그림 1]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

- 지역자원시설세의 의미는 크게 과세자주권적 측면과 환경세적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음.
 - ① 과세자주권적 측면 :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지역자원시설세가 활발히 운용된다면 자주재원을 확대시킬 수 있고, 과세자주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조세수단으로 작용할 것임.

1) 1992년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로 신설되었으나, 2011년 지방세기본법 제정으로 2세목이 통합되어 지역자원시설세로 설치됨. 단, 기존 세목의 과세체계는 유지하여 지역개발세 → 특정자원분, 공동시설세 → 특정부동산분 으로 구분하여 과세
 2)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에만 지출 가능

- ② 환경세적 측면 : 특정자원분에 속하는 세원의 경우, 경제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공해, 자연경관 파괴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수반함. 특히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적·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주장되는 상황에서, 원인자부담원칙에 덧붙여 공익적 관점, 외부불경제 내부화 관점에서 동 세목의 지방세로서의 당위성이 있음.
- 2013년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는 9,121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세수의 1.7% 정도를 점하고 있음. 이 중, 특정자원분의 과세액은 911억 원임.
- 금번 충남도의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원의 과세 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① 외부불경제로 인한 후생손실보전 재원마련
 - ② 지자체 공공서비스에 대한 납세의무
 - ③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문제점 해소
 - ④ 타 발전원(수력, 원자력)과의 과세형평성

[표 2]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체계

구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표준세율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사용되는 유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 하는 자	10㎡당 2원
	지하수 (용천수 포함)	·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해 퍼 올린 지하수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퍼 올린 온천수 · 그 밖의 용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을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는 자	1㎡당 20~20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5/1000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입·출항 시키는 자	1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원자력발전을 하는 자	1kWh당 1원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kwh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1kWh당 0.3원
특정부동산분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특정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또는 선박 :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의 0.04~0.12%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2배를 세액으로 함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 표준세율의 3배를 세액으로 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 내용 재정리

03

▶ 국내외 유사 세원

- 일본과 영국, 국내 타시도의 유사 세원 사례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의 발전가능성 및 다양한 활용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1) 일본 : 법정외세(法定外稅)

-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³⁾에 의해 중앙정부 법률로만 세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법정외세를 통해 지방의회의 조례(단, 총무대신과 협의·동의 필요)로 지역의 특수부존자원을 발굴하여 세원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⁴⁾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주적 세원발굴노력을 통해 세수확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법정외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법정외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나, 지방 자치가 발전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커질수록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

[표 3] 일본 법정외세 현황(2012년도)

과세권자	구 분		종 류
도,부,현	도부현세	보통세	석유가격조정세, 핵연료세, 핵연료물질등 취급세, 핵연료 등 취급세, 임시특례기업세
		목적세	산업폐기물세, 숙박세, 산업폐기물 처리세, 산업폐기물 매립세, 산업폐기물 처분장세, 노리쿠라(乘鞍)환경보전세, 산업폐기물 감량세, 순환자원이용촉진세, 자원순환촉진세
시,정,촌	시정촌세	보통세	협소집합주택세, 자갈채취세, 별장등 소유세, 역사와문화 환경세, 사용후 핵연료세, 공항연락교 이용세
		목적세	사용후 핵연료세, 유어세, 환경미래세, 환경협력세, 산자갈채취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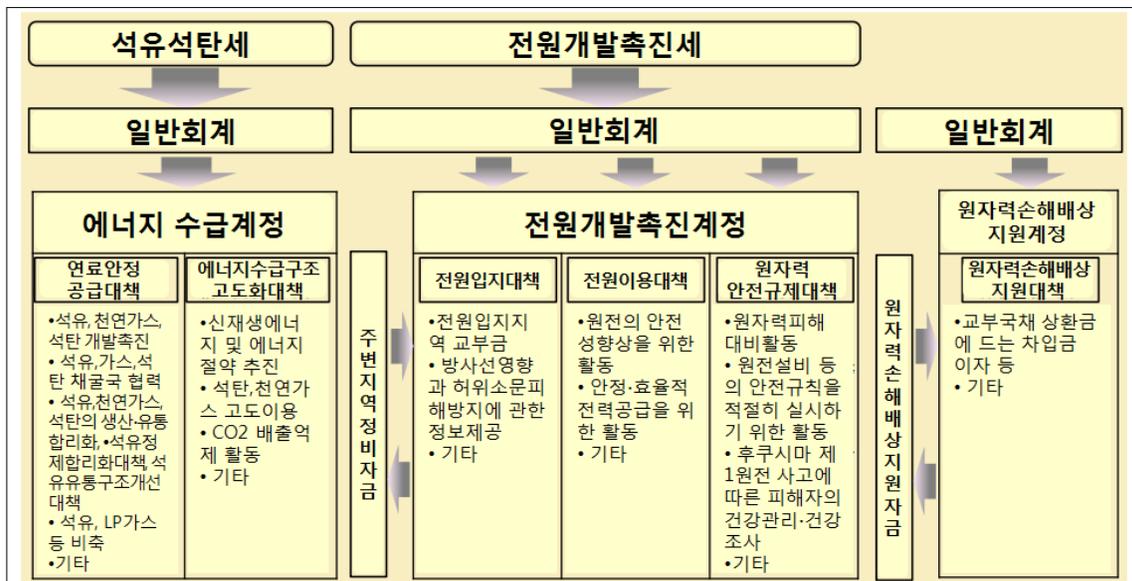
자료) 일본 총무성 「2014년도 지방재정백서」

3)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4)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세라기 보다는 지역의 특별한 정책수행을 위한 수단이라는 정책과세적 의미가 큼(2012년도 도부현 법정외 보통세 및 목적세의 합계는 336억 엔으로, 도부현 세수액 전체의 0.2%에 불과)

2) 일본 : 전원개발촉진세 및 에너지개발특별회계

- 발전(發電) 관련 세목이라는 점에서 지역자원시설세와 유사. 발전시설의 설치촉진 및 운전원 활화를 위한 재정상 조치, 발전시설 이용촉진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일반전기사업자의 판매전기에 부과함(1000kw당 375엔)
- 전원개발촉진세의 용도는 발전용 시설 주변지역 정비법, 전원개발 촉진세법,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등 전원3법에서 규정.
- 전원3법의 교부금은 발전소 입지지역의 산업기반과 사회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분야로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공공시설 등의 지역산업 시설정비와 인재육성 등 소프트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



출처) 일본 재무성 「2014년판 특별회계 가이드북」

[그림 2] 일본 에너지대책 특별회계 구성

3) 영국 : 공동체에너지 지원을 위한 기금

- 영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지역주민 참여에 기초한 공동체 에너지행동(Community Action for Energy), 공동체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mmunity Renewables Initiative), 공동체 에너지(Community Energy) 등에 대해, 정부가 시민참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시작

●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① 발전프로젝트 자금조달 ② 장기간의 발전수익 확보 ③ 수요자에게 발전전력 직접 판매 불가 ④ 그리드 연결수속으로 정리하고 이에 맞는 대응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

● 2014년 ‘공동체 에너지 전략(Community energy Strategy)’ 수립. 동 전략에서는 에너지 생산, 에너지 이용절감, 에너지 구매, 에너지 수요관리 4분야에 공통 적용하는 파트너십 강화, 역량확충, 영향평가 필요성 제시. 2025년까지 에너지수요의 25%를 지역에너지로 공급할 예정

① 지역에너지 평가기금 (Local Energy Assessment Fund, LEAF)

- 에너지기후변화국(DECC)이 지역공동체 에너지전환을 위한 준비활동 지원
- 600여 개 지역공동체 조직이 신청접수하여 236개 조직에게 총920만 파운드 재정지원
- 초기단계 지원 : 지역공동체 주도의 에너지프로젝트 역량 강화
 - 에너지효율성과 재생가능 자원에 대한 대중 참여와 정부공유 증진
 - 지역공동체 주도 재생가능자원의 잠재성 탐색
 - 컨설턴트 자문

② 농촌/도시 공동체에너지 기금(Rural/Urban Community Energy Fund)

- 환경부와 에너지기후변화부 주관. 2013년부터 농촌공동체 에너지기금(1500만 파운드) 마련
- 지역공동체의 재생에너지 설치계획 시, 타당성연구 및 환경평가 비용부담을 위한 기금
- 지역공동체는 지원받은 기금으로 타당성조사 수행, 수익으로 대출금 반환
- 지원절차 : ① 타당성조사를 목적으로 2만 파운드 지원
 - ② 연구결과 바탕으로 사업시, 13만 파운드 사업비 용자 (저금리)
- 지원가능 기술 : 풍력터빈, 수력, 태양광, 태양열, 히트펌프, 바이오, 저탄소/재생 열에너지 네트워크, 가스 열병합발전 등
- 2014년부터는 도시공동체에너지기금 (1000만 파운드)도 마련

4) 부산, 전남, 경북 : 원자력발전 특별회계

- 부산(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전남(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경북(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의 명칭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음.
- 내용면에서는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관련 국비사업 매칭, 도로사업 등의 지역개발 사업에 이용

[표 4] 원전특별회계 광역지자체별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부산	경북	전남
총사업비		7,197	33,080	16,946
원전관련	안전대책 강화	430		25
	안전지역 개발사업	6,100	800	5,250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50	-	-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70	2,946	-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	435	-
에너지	에너지환경 네트워크	-	1,090	-
	에너지산업 육성지원	-	3,487	-
	에너지시책	-	400	-
	에너지절약사업	-	4,709	-
특별사업	한옥마을 및 신청사 신재생에너지 설치	-	10,000	1,500
기타	예비비	147	9,213	10,171

5) 서울시 : 기후변화기금

-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 보유 및 특정자금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원전하나줄이기’ 운동으로 유명한 서울시는 2007년부터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전지구적 환경문제인 온실가스 배출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목적

[표 5]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개요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142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설치목적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등 촉진
설치년도	2007년
기금재원	일반회계 전입금, 금융기관 차입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배당금, 기금운용 수익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기타수입금
기금용도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사업 지원 ②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교체사업 지원 ③ 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의 장려 ④ 빈곤층 에너지 지원사업 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융자
주요사업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융자지원,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민간주택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기금 운용규모 ('14년도)	총 50,545백만 원 - 융자사업비 18,000백만 원 - 비용자성 사업비 8,576백만 원 - 기본경비 4백만 원 - 예치금 13,965백만 원 - 예탁금 10,000백만 원

● 사업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③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⑤ 에너지절약 우수단체 선정 지원 ⑦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⑨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 운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확대 ④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⑥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⑧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⑩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	--

● 시사점

- 일본에서는 2006년 ‘행정개혁추진법’을 통해 특별회계 개혁 단행. 그간 특별회계에 대해 ① 다수 설치로 인한 재정일관성 저해 ② 국민감시 불충분으로 인한 낭비지출 우려 ③ 불요 불급한 사업시행 논란 ④ 재정자금의 비효율적 활용 의심 등의 지적이 있어왔는데, 동법 제정을 통해 특별회계에 대한 투명화, 정보공개 등을 강화
- 금번 충남에 설치되는 화력발전 특별회계(가칭)의 경우도 위와 같은 우려가 일어날 수 있음. 목적세인 동 세목의 적절한 용도사용, 투명화, 정보공개 등이 요구됨.

- 일본의 전원개발촉진세가 지역경제력과 재정력 향상 등의 선순환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비판은 우리의 지역자원시설세 활용에 있어 반면교사적 교훈을 주고 있음. 지역경제 및 재정력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용도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
- 영국의 경우 현상에 기반한 문제점을 파악·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공동체 에너지 전략의 경우 강력한 시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으나, 지역공동체 에너지를 추진하는 첫발로서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음.
- LEAF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① 자금사용처에 대한 조망 제공, 정책/활동유형에 따른 장 단기적 산출물, 초기단계에 적절/가능한 산출물 식별 ② 성공을 지원/방해하는 요소 식별 ③ 프로젝트/지역 유형에 따른 공통성 파악 ④ 프로젝트에서 지역공동체가 수행한 역할 파악 ⑤ 프로젝트에서 재정지원의 도움정도 파악 등을 목적으로 진행. 향후 충남도가 지원할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평가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원자력발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지역의 경우,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에 있어 일정규모를 예비비로 두고 사용하고 있음. 지출이 까다로운 면은 있으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음.
- 기금운영을 통해서도 지역의 특색있는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용자 지원 및 공모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04

▶ 요약 및 제언

- 자주자원을 확충하고, 국제 중심의 조세체계에서 탈피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가 주목받고 있음. 동 세는 지자체의 세원 발굴 노력을 통해 세수확충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세목이기 때문임. 비록 세수는 크지 않으나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목적세인 동 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소방사무,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목적임. 특히, 환경세적 측면이 강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성격을 감안하면, 화력발전소의 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질 수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친환경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동 세수를 기반으로 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운용하겠다는 것은 타당함.
 -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사업, 에너지 다소비업체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 등 10대 핵심 사업을 추진
 - ‘2020 충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이라는 중기계획 안에서 체계적으로 추진 예정
- 특히, 화력발전소 입지지역(태안, 보령, 당진, 서천, 서산)에 화력발전 소재부품, 연관산업 육성, 고효율·친환경 청정발전 신기술 개발을 위한 화력발전연구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사업은 원인자 부담원칙의 의미를 넘어, 세수가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력 확충 등의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됨.

- 나아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에너지정제·저장시설(LNG, 석유비축)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지역 내 새로운 세원 발굴 노력이 요구됨.

이 민 정 초빙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041-840-1172, minjoung1006@cni.re.kr

여 형 범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041-840-1276, hbyeo@cni.re.kr

※ 본 연구는 충남연구원 2014년 전략과제 ‘지역자원시설세 활용을 위한 사례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 참고 자료 ◆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2014) '2014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환경수자원위원회)'
- 서울특별시(2014)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
- 서울특별시(2014) 「2013 에너지백서」
- 일본 재무성 「2014년판 특별회계 가이드북」
- 일본 총무성 「2014년판 지방재정백서」
- 한재각, 이정필(2014) '영국 에너지전환과 공동체에너지의 의의', STEPI Working Paper Series.
- 행정자치부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각년도
-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2014a) DECC LEAF Evaluation
-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2014b) Community Energy Strategy; Full Report
- Rabinowitz et al.(2014) Community Energy For Local Authorities, Pure Leapfrog

충남리포트(2014년~현재)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인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가능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밭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홍성효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방안	오명택·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	이호중	2014.07.16
2014-23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정만·고승희	2014.07.17
2014-24	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최은희	2014.07.21
2014-2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김양중	2014.07.23
2014-26	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장종익	2014.07.28
2014-27	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	주운현	2014.07.30
2014-28	충남 정책 키워드(3농혁신, 사회적경제)의 SNS 데이터 분석	임화진	2014.07.31
2014-29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유병덕·최영화	2014.08.05
2014-30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양중	2014.08.07
2014-31	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	박철희	2014.08.11
2014-32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	김찬규 외	2014.08.21
2014-33	지방 3.0 시대,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정창수	2014.09.11
2014-34	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김순은	2014.09.16
2014-35	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	박 경	2014.09.18
2014-36	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김흥기	2014.09.23
2014-37	충청남도 행복기움지원단 활성화 방향과 과제	김용현	2014.09.25
2014-38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안	변창흠	2014.09.30
2014-39	충청남도 주민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과 전략	안성호·곽현근	2014.10.02
2014-40	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현 외	2014.10.08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41	충남의 산업단지, 공공디자인으로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이충훈	2014.10.16
2014-42	충청남도과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박경철	2014.10.17
2014-43	농촌의 에너지자립, 산림바이오매스에서 찾다: 일본 산림구원대 활동	박춘섭	2014.10.30
2014-44	일본 내발적 발전의 도시형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4.11.06
2014-45	충남 지역 현실이 반영된 교통수요분석 DB 구축과 관리 필요	김형철 · 김원철	2014.11.12
2014-46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이해와 도입방안	김원철 · 유준일	2014.11.20
2014-47	한·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김양중	2014.11.26
2014-48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강마야	2014.11.26
2014-49	한·중 FTA에 따른 충남 수산업의 위기와 기회	김종화	2014.11.26
2014-50	한·중 FTA, 충남 지역발전 전략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박경철	2014.11.26
2014-51	서해안 시대, 충청남도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방안	채진원 외	2014.12.03
2014-52	충남도과 중국 헤이룽장성 교류협력전략	박인성	2014.12.04
2014-53	인권 선진으로 나가는 충남의 정책과제	성태규	2014.12.10
2014-54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건강피해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명형남	2014.12.17
2014-55	충남 대형국책사업 발굴 및 유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종윤 · 임재영	2014.12.25
2015-01	충남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5.01.05
2015-02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신동호	2015.01.13
2015-03	충청남도 문화예술 비전과 발전전략	박철희	2015.01.26
2015-04	충청남도 행정리 단위 마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특성	최은영 외	2015.02.03
2015-05	충청남도 도서(島嶼) 특성과 발전방향	한상욱	2015.02.12
2015-06	충청남도 행정통·리 마을의 최근(2005~2010년) 변화와 시사점	최은영 외	2015.02.17
2015-07	2015년 충남 GRDP 전망 - GRDP 100조 시대 충남의 새로운 도약	김양중	2015.02.25
2015-08	글로벌 차원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정준호	2015.03.05
2015-09	신규형발전을 위한 다층적 균형정책	박배균 · 김동완	2015.03.12
2015-10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조명래	2015.03.20
2015-11	삽교호 수계! 충남형 유역관리방안의 선제적 추진이 필요하다	김영일 외	2015.03.26
2015-12	하구의 생태적 가치!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이상진	2015.04.01
2015-13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 과제	강현수	2015.04.10
2015-14	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 - 전력요금의 지역신호 강화 방안 -	이인희	2015.04.16
2015-15	충남의 철강산업 실태와 발전방안	백운성	2015.04.17
2015-16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사공정희	2015.04.22
2015-17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	강마야 · 이관률	2015.04.24
2015-18	충남 “미디어” 현황과 발전전략	권오성	2015.04.29
2015-19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전략	이상준 외	2015.05.01
2015-20	충남 도민이 꿈꾸는 행복한 성장	김양중 · 백운성	2015.05.15
2015-21	양봉산업의 의의와 발전가능성	이관률	2015.05.19
2015-22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류진석	2015.05.28
2015-23	과소화·고령화 된 농촌마을,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	조영재	2015.06.05
2015-24	충남의 환경보전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명형남	2015.06.12
2015-25	충남 로컬푸드 직매장의 실태 및 성공전략	김종화	2015.06.19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